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169
----------	-------

제출년월일 : 2003. 10. 1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시의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로용량 증대 및 효율화 방안이 요구되어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 나.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안 제5조)
- 다.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에서 다른 도로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안 제6조)
- 라. 연결로등의 접속부분 포장방법·변속차로·배수시설·분리대·길어깨·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마. 연결로 외에 차량의 진입·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한에 있어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시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변속차로·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등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진에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민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시·군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민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우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적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기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직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 (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미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연결로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건 설 과 ☎ 940-4661
입 안 자	건 설 과 장	우 범 찬
	도로유지담당	유 광 형
	담 당 자	조 길 현

[별표 1]

연결도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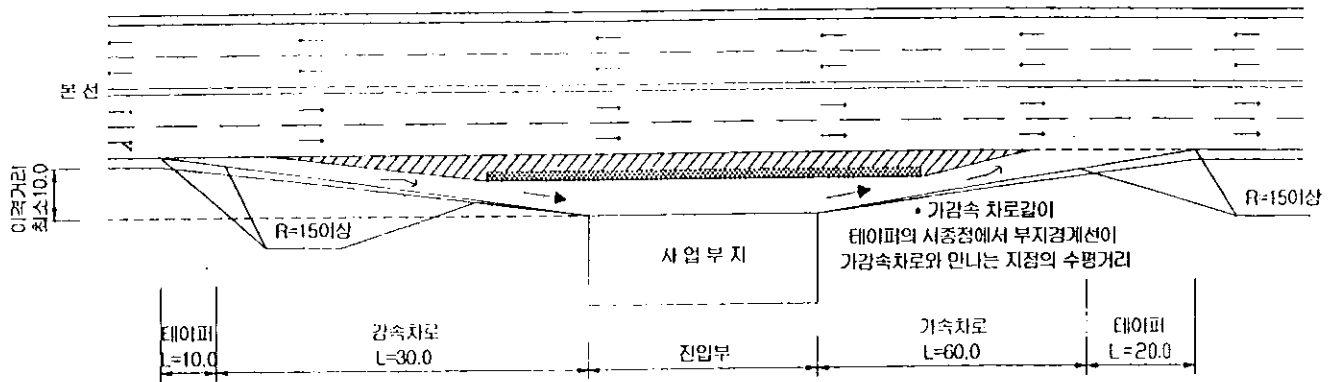
도 면 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형물을 1/1,200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포장끝선·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접도구역선·도류화시설·배수시설·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단면도	종방향 1/1,200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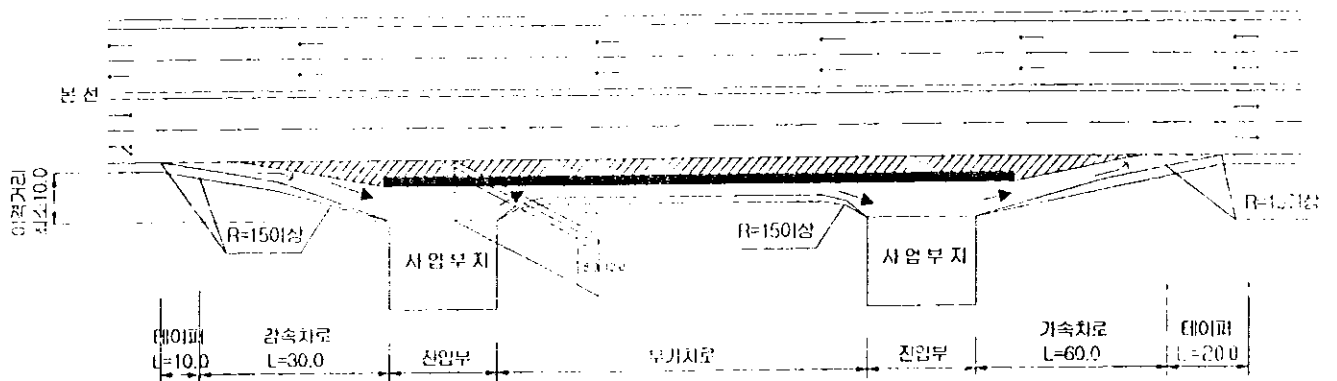
연결도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지점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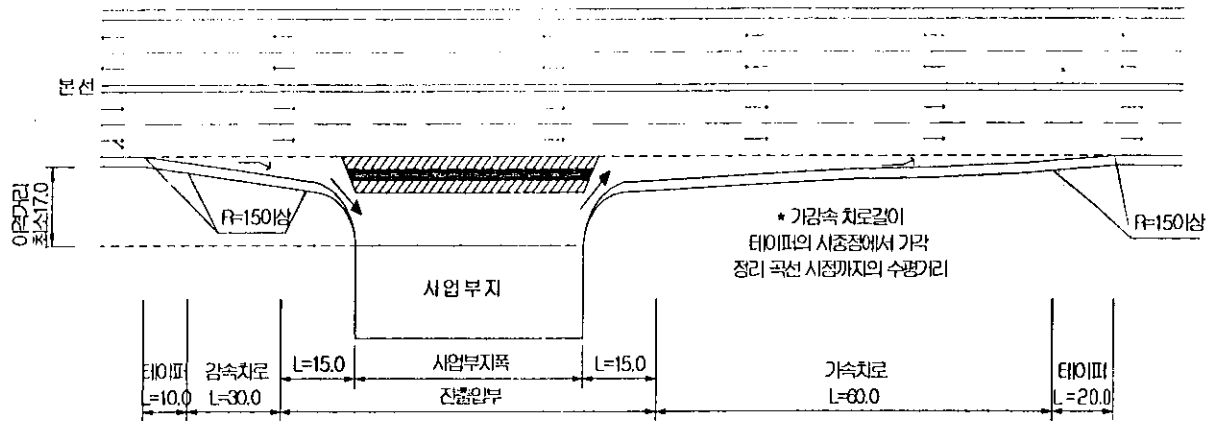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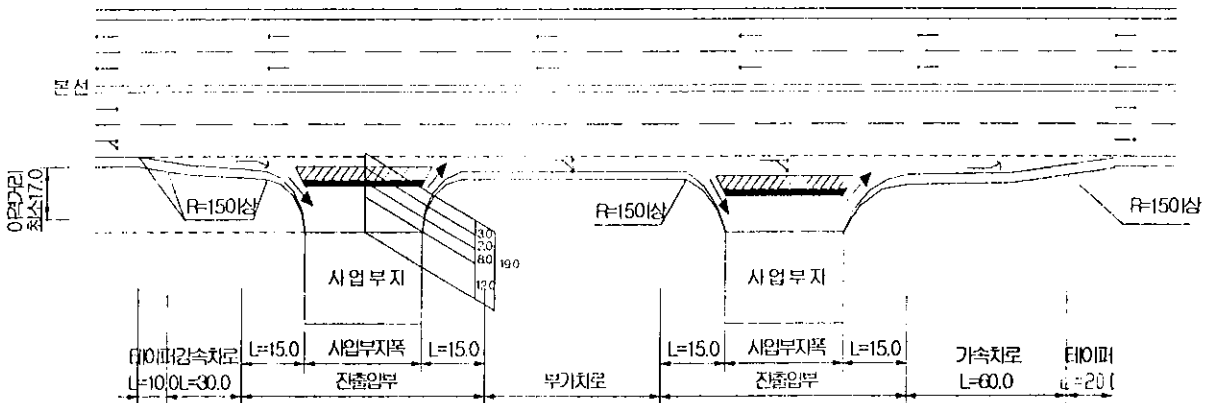


2. 평행식 민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비고 : 위 표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최소거리	곡선반경	최소거리	곡선반경	최소거리	곡선반경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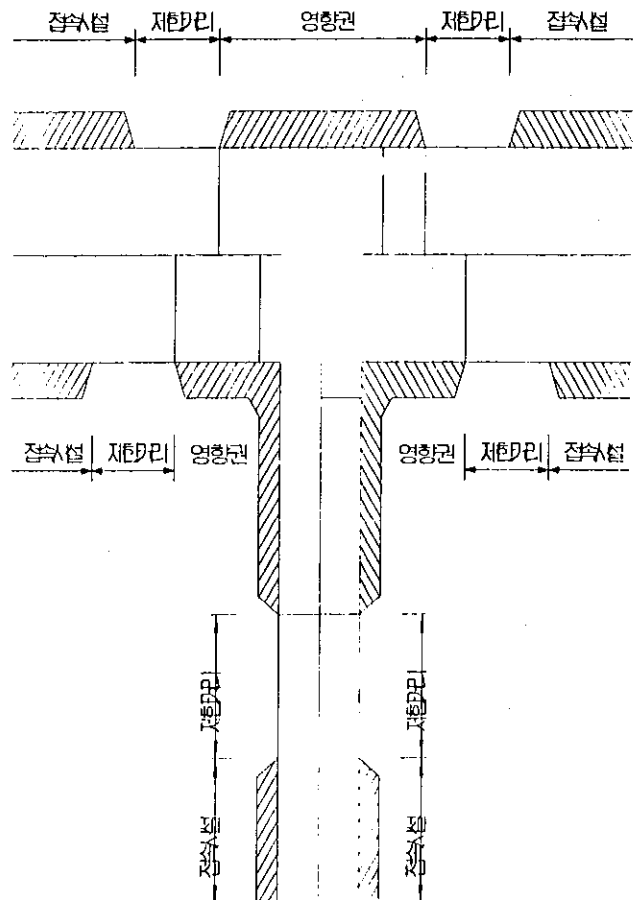
1. 교차로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길이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5

▶ 비 고

1. 도류화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수립하는 도류화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교차로영향권의 길이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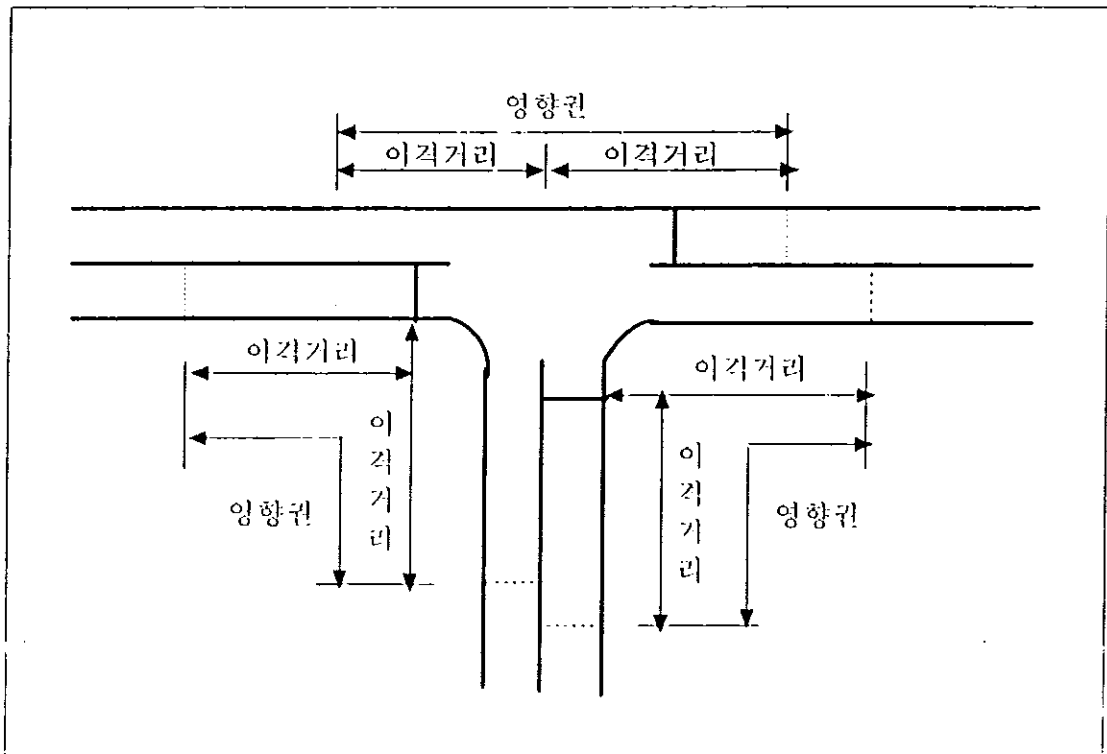
설계속도(km/h)	교차로영향권 길이(m)
50	50
60	70
70	90
80	120

주) 교차로영향권의 길이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선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시간에 의하여 산출

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시 가·감속부에 동일한 연장으로 적용한다.

다. 교차로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그림] 과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3지 교차로의 직진 차선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그림]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 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 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퇴비 실·창고 및 양어장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주 : 1) 설계속도 80km/h이상 또는 4차선 이상 기준임. ()는 설계속도 60km/h이하 기준2차로 이하.
- 2) 연결로가 연결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8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별지]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 연건지점					
⑦사용목적		⑧점용면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행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도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신 청 서		점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제	
		↓	
교 부		허 가 서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우리시의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로용량 증대 및 효율화 방안이 요구되어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 나.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구역 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안 제5조)
- 다.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에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안 제6조)
- 라. 연결로 등의 접속부분 포장방법·변속차로·배수시설·분리대·길어깨·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마. 연결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조례안은 도로법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내용타당성

- 동 조례안 그동안 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4차선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연결허가 기준이 없어 건설교통부령 및 경기도조례를 준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음으로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 도로의 용량증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로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4차선 이상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적용범위(안 제3조)를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서 시·군도 2차선이하 도로와 농어촌도로는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정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부터 안 제13조(공사시행)까지는 건설교통부시행규칙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과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현재 우리시 시도, 군도는 4차선이상의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와 농어촌 도로이하의 도로를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동 조례안 부칙에 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와 연결로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서 조례시행 후의 문제점 및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였음.